

2021년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 시행계획 공고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부터 제12조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8조부터 11조의3까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부터 제23조까지에 의거
“2021년도 체육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 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2021. 2.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국 민 체 육 진 흥 공 단 이 사 장

필수 확인 사항

-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연수 신청, 자격증 발급 등을 위해서는 체육지도자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가입 하셔야 합니다.
- 코로나19 등으로 자격검정 및 연수일정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체육지도자 홈페이지를 통하여 각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별 세부시행계획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지도자 홈페이지(<http://www.insports.or.kr>)

- 2021년부터 체육지도자 동·하계종목 실기·구술시험을 이원화 실시함에 따라 종목별로 취득절차 및 일정에 차이가 있으니 취득하고자 하는 종목에 유의하시어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스포츠지도사 (하계)

■ 공통사항: 만 18세 이상인 사람

■ 자격종목(51개 종목) * 계절영향이 없는 동계종목(빙상, 아이스하키, 컬링 등) 포함

검도, 골프, 공수도, 궁도, 근대5종,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럭비, 레슬링,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사이클, 산악,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수상스키, 수영, 수중, 스키,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역도, 요트, 우슈, 유도, 육상, 인라인롤러, 정구, 조정, 체조,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태권,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하키, 핸드볼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요건					취득절차				비고
					필기	실기	구술	연수 (시간)	
일반 과정	· '21.5.15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			○ (250)	
특별 과정	· 현재 ^{주1)}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자격 종목의 3년 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을 것							○ (250)	
필기	접수 및 서류제출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필기과목(4과목)			
	4.8 ~ 4.16		4.8 ~ 4.20	5.15	6.3	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스포츠영양학			
연수	구분	등락 및 연수비 납부		연수	현장실습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연수기관(예정) ^{주3)}
	1차	3.12 ~ 3.19		3.20 ~ 12.12	3.20 ~ 12.12		7.23, 12.17 ^{주2)}		국민체육진흥공단
	2차	6.4 ~ 6.11		6.19 ~ 12.12	7.30 ~ 12.12		12.17		

주1) 각종 경력은 연수시작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반기 연수는 3.20 기준, 하반기 연수는 6.19 기준임
주2) 상반기(6월)까지 연수이수 기준(현장실습 포함)을 완료한 경우 7.23 자격증을 발급하며, 이외에는 12.17 자격증 발급
주3) 상반기·하반기 연수는 연수기관의 사정에 따라 실시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연수기관별 연수 시행 공고를 반드시 확인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요건					취득절차				비고
					필기	실기	구술	연수 (시간)	
일반 과정	· '21.5.15 현재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	○	○	○ (90)	
	· '21.5.15 현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1)}				○	○	○	○ (90)	
	· '21.5.15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 ^{*2)} 에 해당하는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	○	○	○ (90)	
특별 과정	· '21.6.17 현재 학교체육교사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체육과목)자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3)}					○	○		경과 조치
	· '21.6.17 현재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체육과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	● ^{*4)} (3)	
	· '21.6.17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 ^{*4)} (3)	
	· '21.6.17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종목에 한함)에 등록된 프로스포츠 선수(프로스포츠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 3년 이상일 것						○	○ (40)	
	· '21.6.17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종목에 한함)에 등록된 프로스포츠 선수로서 정회원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3)}						○	○ (40)	경과 조치
추가 취득	· '21.6.17 현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4)} (3)	
필기	접수 및 서류제출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필기과목(7과목 중 5과목 선택)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4.8 ~ 4.16	4.8 ~ 4.26	5.15	6.3					
실기 구술	접수 및 서류제출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대한체육회(태권도 제외), 국가원(태권도)				
	6.4 ~ 6.11	6.4 ~ 6.14	6.17 ~ 7.11	7.15					
연수	구분	등록 및 연수비 납부	연수	현장실습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연수기관(예정) ^{*6)}			
	1차	3.12 ~ 3.19	3.20 ~ 10.17	3.20 ~ 10.17	7.23, 11.5 ^{*5)}	중앙대			
	2차	7.16 ~ 7.22	7.26 ~ 10.17	7.26 ~ 10.17	11.5	국기원, 동아대, 조선대, 중앙대, 충남대, 충북대, 한체대			

주1)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2년 2월 28일까지 졸업(학위)증명서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최종 불합격(자격검정 및 연수 합격취소, 응시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주2) 제1호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주3) 적용시한 : 2021년 12월 10일까지
주4)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주5) 상반기(6월)까지 연수이수(현장실습 포함)를 완료한 경우 7.23 자격증을 발급하며, 이외에는 11.5 자격증 발급
주6) 상반기·하반기 연수는 각 연수기관의 사정에 따라 실시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연수기관별 연수 시행 공고를 반드시 확인

전문스포츠지도사 (동계)

■ 공통사항: 만 18세 이상인 사람

■ 자격종목(4개 종목) : 루지, 바이애슬론, 봅슬레이스켈레톤, 스키

※ 동계종목 실기·구술검정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및 검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3~4월 중 실시가 불가능할 수 있음
(종목별 세부 시행 공고를 반드시 확인)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요건		취득절차				비고
		실기	구술	필기	연수 (시간)	
일반 과정	· '21.3.4 현재 해당 자격 종목에 대하여 4년 이상의 경기경력이 있는 사람	○	○	○	○ (90)	
	· '21.3.4 현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주1)}	○	○	○	○ (90)	
	· '21.3.4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 ^{주2)} 에 해당하는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 그 경기경력 및 수업연한의 합산 기간이 4년 이상인 사람	○	○	○	○ (90)	
특별 과정	· '21.3.4 현재 학교체육교사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체육과목)자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주3)}	○	○			경과 조치
	· '21.3.4 현재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체육과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		● ^{주4)} (3)	
	· '21.3.4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 ^{주4)} (3)	
	· '21.3.4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종목에 한함)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프로스포츠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 3년 이상일 것		○		○ (40)	
	· '21.3.4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종목에 한함)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로서 정회원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주5)}		○		○ (40)	경과 조치
추가 취득	· '21.3.4 현재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주4)} (3)	
실기 구술	접수 및 서류제출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2.25 ~ 3.4	2.25 ~ 3.4		3.10 ~ 4.4	4.8	대한체육회
필기	접수 및 서류제출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필기과목(7과목 중 5과목 선택)
	4.8 ~ 4.16	4.8 ~ 4.26		5.15	6.3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연수	구분	등록 및 연수비 납부	연수	현장실습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연수기관(예정) ^{주6)}
	1차	3.12 ~ 3.19	3.20 ~ 10.17	3.20 ~ 10.17	7.23, 11.5 ^{주5)}	중앙대
	2차	7.16 ~ 7.22	7.26 ~ 10.17	7.26 ~ 10.17	11.5	국기원, 동아대, 조선대, 중앙대, 충남대, 한체대

주1)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2년 2월 28일까지 졸업(학위)증명서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최종 불합격(자격검정 및 연수 합격취소, 응시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주2) 제1호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주3) 적용시한 : 2021년 12월 10일까지

주4)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주5) 상반기(6월)까지 연수이수(현장실습 포함)를 완료한 경우 7.23 자격증을 발급하며, 이외에는 11.5 자격증 발급

주6) 상반기·하반기 연수는 각 연수기관의 사정에 따라 실시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연수기관별 연수 시행 공고를 반드시 확인

생활스포츠지도사 (하계)

■ 공통사항: 만 18세 이상인 사람

■ 자격종목(56개 종목) * 계절영향이 없는 동계종목(빙상, 아이스하키, 컬링 등) 포함

검도, 게이트볼, 골프, 궁도,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등산,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쿼시, 스킨스쿠버,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팅, 자전거, 정구, 조정, 족구, 철인3종경기,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펜싱, 풋살, 하키, 합기도, 핸드볼, 행글라이딩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요건		취득절차				비고
		필기	실기	구술	연수(시간)	
일반과정	· '21.5.15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	○	○	○ (120)	
	· '15.11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15.11 당시 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법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학교로 한정)의 체육 관련 학과에 재학중인 사람으로서 '15.11 이후 체육 분야에 관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21.5.15까지 졸업(학위)증명서 발급가능한 자) ^{주1)}	○	○	○	○ (120)	경과조치
특별과정	· 현재 ^{주2)} 학교체육교사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체육 과목) 자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주3)}				○ (40)	경과조치
	· '21.6.17 현재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체육과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	○ (40)	
	· 현재 ^{주2)}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40)	
	· '21.6.17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종목에 한함)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프로스포츠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 3년 이상일 것			○	○ (40)	
	· '21.6.17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종목에 한함)에 등록된 프로스포츠 선수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정회원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주3)}			○	○ (40)	경과조치
	· '21.6.17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주4)} (3)	
	· '21.5.15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40)	
추가취득	· '21.6.17 현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주4)} (3)	
필기	접수 및 서류제출 4.8 ~ 4.16	응시수수료 납부 4.8 ~ 4.20	시험일 5.15	합격자 발표 6.3	필기과목(4과목) 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건강교육론	
실기 구술	접수 및 서류제출 6.4 ~ 6.11	응시수수료 납부 6.4 ~ 6.14	시험일 6.17 ~ 7.11	합격자 발표 7.15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대한체육회(태권도 제외), 국기원(태권도)	
연수	구분	등록 및 연수비 납부	연수	현장실습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연수기관(예정) ^{주6)}
	1차	3.12 ~ 3.19	3.20 ~ 10.24	3.20 ~ 10.24	7.23, 11.5 ^{주5)}	국민체육진흥공단, 원광대
	2차	7.16 ~ 7.23	7.31 ~ 10.24	7.31 ~ 10.24	11.5	

주1) 적용시한 : 2015.11.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2) 각종 경력은 연수시작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반기 연수는 3.20 기준, 하반기 연수는 7.31 기준임

주3) 적용시한 : 2021년 12월 10일까지

주4) 스포츠올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주5) 상반기(6월)까지 연수이수(현장실습 포함)를 완료한 경우 7.23 자격증을 발급하며, 이외에는 11.5 자격증 발급

주6) 상반기·하반기 연수는 각 연수기관의 사정에 따라 실시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연수기관별 연수 시행 공고를 반드시 확인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요건		취득절차				비고
		필기	실기	구술	연수(시간)	
일반과정	· '21.5.15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	○	○	○ (90)	
특별과정	· '21.6.17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유소년 또는 노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40)	
	· '21.6.17 현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별표1 제3호의 비교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40)	
	· '21.6.17 현재 유소년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40)	
추가취득	· '21.6.17 현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주1)} (3)	
필기	접수 및 응시수수료 납부 4.15 ~ 4.23	시험일 5.15	합격자 발표 6.3	필기과목(7과목 중 5과목 선택)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실기 구술	접수 및 서류제출 6.4 ~ 6.11	응시수수료 납부 6.4 ~ 6.14	시험일 6.17 ~ 7.11	합격자 발표 7.15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대한체육회(태권도 제외), 국기원(태권도)	
연수	구분	등록 및 연수비 납부	연수	현장실습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연수기관(예정) ^{주3)}
	1차	3.12 ~ 3.19	3.20 ~ 10.17	3.20 ~ 10.17	7.23, 11.5 ^{주2)}	강릉원주대 등 10개 기관
	2차	7.16 ~ 7.22	7.26 ~ 10.17	7.26 ~ 10.17	11.5	강릉원주대 등 20개 기관

주1) 스포츠올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주2) 상반기(6월)까지 연수이수(현장실습 포함)를 완료한 경우 7.23 자격증을 발급하며, 이외에는 11.5 자격증 발급

주3) 상반기·하반기 연수는 각 연수기관의 사정에 따라 실시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연수기관별 연수 시행 공고를 반드시 확인

■ 자격종목 (1개 종목) : 스키

※ 동계종목 실기·구술검정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및 검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3~4월 중 실시가 불가능할 수 있음
(종목별 세부 시행 공고를 반드시 확인)

■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요건		취득절차				비고
		실기	구술	필기	연수 (시간)	
일반 과정	· '21.3.4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	○	○	○ (120)	
	· '15.1.1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이 다음 요건을 갖춘 경우 · '15.1.1 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같은 법에 따라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학교로 한정)의 체육 관련 학과에 재학중인 사람으로서 '15.1.1 이후 체육 분야에 관한 학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21.3.4 까지 졸업(학위)증명서 발급가능한 자) ^{주1)}	○	○	○	○ (120)	경과 조치
특별 과정	· 현재 ^{주2)} 학교체육교사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체육 과목) 자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주3)}				○ (40)	경과 조치
	· '21.3.4 현재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체육과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		○ (40)	
	· 현재 ^{주2)}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40)	
	· '21.3.4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종목에 한함)에 등록된 프로스포츠 선수(프로 스포츠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 3년 이상일 것		○		○ (40)	
	· '21.3.4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종목에 한함)에 등록된 프로스포츠 선수로서 해당 자격 종목의 정회원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주3)}		○		○ (40)	경과 조치
	· '21.3.4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주4)} (3)	
· '21.3.4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40)	
추가 취득	· '21.3.4 현재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주4)} (3)	
실기 구술	접수 및 서류제출 2.25 ~ 3. 4	응시수수료 납부 2.25 ~ 3. 4	시험일 3.10 ~ 4. 4	합격자 발표 4. 8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대한체육회	
필기	접수 및 서류제출 4.8 ~ 4.16	응시수수료 납부 4.8 ~ 4.20	시험일 5.15	합격자 발표 6. 3	필기과목(4과목) 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건강교육론	
연수	구분	등록 및 연수비 납부	연수	현장실습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연수기관(예정) ^{주5)}
	1차	3.12 ~ 3.19	3.20 ~ 10.24	3.20 ~ 10.24	7.23, 11.5 ^{주5)}	국민체육진흥공단, 원광대
	2차	7.16 ~ 7.23	7.31 ~ 10.24	7.31 ~ 10.24	11.5	

주1) 적용시한 : 2015.1.1. 이후 「병역법」에 따른 군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2) 각종 경력은 연수시작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반기 연수는 3.20 기준, 하반기 연수는 7.31 기준임

주3) 적용시한 : 2021년 12월 10일까지

주4)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주5) 상반기(6월)까지 연수이수(현장실습 포함)를 완료한 경우 7.23 자격증을 발급하며, 이외에는 11.5 자격증 발급

주6) 상반기·하반기 연수는 각 연수기관의 사정에 따라 실시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연수기관별 연수 시행 공고를 반드시 확인

■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요건		취득절차				비고
		실기	구술	필기	연수 (시간)	
일반 과정	· '21.3.4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	○	○	○ (90)	
특별 과정	· '21.3.4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유소년 또는 노인 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40)	
	· '21.3.4 현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별표1 제3호의 비교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40)	
	· '21.3.4 현재 유소년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40)	
추가 취득	· '21.3.4 현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주1)} (3)	
실기 구술	접수 및 서류제출 2.25 ~ 3. 4	응시수수료 납부 2.25 ~ 3. 4	시험일 3.10 ~ 4. 4	합격자 발표 4. 8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대한체육회	
필기	접수 및 응시수수료 납부 4.15 ~ 4.23		시험일 5.15	합격자 발표 6. 3	필기과목(7과목 중 5과목 선택)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연수	구분	등록 및 연수비 납부	연수	현장실습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연수기관(예정) ^{주3)}
	1차	3.12 ~ 3.19	3.20 ~ 10.17	3.20 ~ 10.17	7.23, 11.5 ^{주2)}	강릉원주대 등 10개 기관
	2차	7.16 ~ 7.22	7.26 ~ 10.17	7.26 ~ 10.17	11.5	강릉원주대 등 20개 기관

주1)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주2) 상반기(6월)까지 연수이수(현장실습 포함)를 완료한 경우 7.23 자격증을 발급하며, 이외에는 11.5 자격증 발급

주3) 상반기·하반기 연수는 각 연수기관의 사정에 따라 실시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연수기관별 연수 시행 공고를 반드시 확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하계)

■ 공통사항: 만 18세 이상인 사람

■ 자격종목(32개 종목) * 계절영향이 없는 동계종목(빙상, 아이스하키, 컬링 등) 포함

골볼, 공수도, 농구, 댄스스포츠, 럭비, 레슬링, 론볼,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볼링, 사격, 사이클, 수영, 승마, 아이스하키, 양궁, 역도, 오리엔티어링, 요트, 유도, 육상, 조정, 축구, 카누, 컬링, 탁구, 태권도, 테니스, 트라이애슬론, 펜싱, 핸드볼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요건		취득절차				비고
		필기	실기	구술	연수 (시간)	
일반 과정	· '21.5.15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	○	○	○ (250)	
특별 과정	· 현재 ^{주1)}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 국제스포츠연맹,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스포츠연맹, 국제장애유형별 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자격종목의 3년 이상 경기지도경력이 있을 것				○ (250)	
필기	접수 및 서류제출 4.8 ~ 4.16	응시수수료 납부 4.8 ~ 4.20	시험일 5.15	합격자 발표 6.3	필기과목(4과목) 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장애인스포츠론	
실기 구술	접수 및 서류제출 6.4 ~ 6.11	응시수수료 납부 6.4 ~ 6.14	시험일 6.17 ~ 7.11	합격자 발표 7.15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대한장애인체육회(태권도 제외), 국기원(태권도)	
연수	구분	등록 및 연수비 납부	연수	현장실습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연수기관(예정) ^{주3)}
	1차	3.12 ~ 3.19	3.20 ~ 12.19	3.20 ~ 12.19	7.23, 12.24 ^{주2)}	국민체육진흥공단
	2차	7.16 ~ 7.23	7.31 ~ 12.19	7.31 ~ 12.19	12.24	

주1) 각종 경력은 연수시작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반기 연수는 3.20 기준, 하반기 연수는 7.31 기준임

주2) 상반기(6월)까지 연수이수(현장실습 포함)를 완료한 경우 7.23 자격증을 발급하며, 이외에는 12.24 자격증 발급

주3) 상반기·하반기 연수는 연수기관의 사정에 따라 실시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연수기관별 연수 시행 공고를 반드시 확인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요건		취득절차				비고
		필기	실기	구술	연수 (시간)	
일반 과정	· '21.5.15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	○	○	○ (90)	
특별 과정	· '21.6.17 현재 학교체육교사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체육 과목) 또는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에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주1)}		○	○	○ (40)	경과 조치
	· '21.6.17 현재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체육 과목)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을 가지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	○ (40)	
	· '21.6.17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 국제스포츠연맹,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스포츠연맹, 국제장애유형별 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 (40)	
	·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실시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를 수료한 후, '21.6.17 현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2년간 체육을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 ^{주2)}			○		특례
	· '21.5.15 현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별표 1 제2호의 비교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주3)} (1과목)	○	○	○ (40)	
	· '21.5.15 현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별표 1 제4호의 비교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주3)} (1과목)	○	○	○ (40)	
	· '21.5.15 현재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별표 1 제5호의 비교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주3)} (1과목)	○	○	○ (40)	
추가 취득	· '21.6.17 현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주4)} (3)	
필기	접수 및 응시수수료 납부 4.15 ~ 4.23	시험일 5.15	합격자 발표 6.3	필기과목(5과목) 필수(1) : 특수체육론 선택(4) :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접수 및 서류제출 6.4 ~ 6.11	응시수수료 납부 6.4 ~ 6.14	시험일 6.17 ~ 7.11	합격자 발표 7.15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대한장애인체육회(태권도 제외), 국기원(태권도)	
연수	구분	등록 및 연수비 납부	연수	현장실습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연수기관(예정) ^{주6)}
	1차	3.12 ~ 3.19	3.20 ~ 10.17	3.20 ~ 10.17	7.23, 11.5 ^{주5)}	백석대, 용인대, 한체대
	2차	7.16 ~ 7.23	7.26 ~ 10.17	7.26 ~ 10.17	11.5	대구대, 백석대, 용인대, 원광대, 한체대

주1) 적용시한 : 2021년 12월 10일까지

주2) 적용시한 :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3) 필기1과목 : 특수체육론

주4)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주5) 상반기(6월)까지 연수이수(현장실습 포함)를 완료한 경우 7.23 자격증을 발급하며, 이외에는 11.5 자격증 발급

주6) 상반기·하반기 연수는 각 연수기관의 사정에 따라 실시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연수기관별 연수 시행 공고를 반드시 확인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동계)

■ 공통사항: 만 18세 이상인 사람

■ 자격종목 (2개 종목) : 스노우보드, 알파인스키·바이애슬론·크로스컨트리

※ 동계종목 실기·구술검정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및 검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3~4월 중 실시가 불가능할 수 있음
(종목별 세부 시행 공고를 반드시 확인)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요건					취득절차		비고
					실기	구술	
일반 과정	· '21.3.4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자격종목의 지도경력이 있는 사람				○	○	○ (250)
특별 과정	· 현재 ^{주1)}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 국제스포츠연맹,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스포츠연맹,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자격종목의 3년 이상 경기지도경력이 있을 것						○ (250)
실기 구술	접수 및 서류제출 2.25 ~ 3. 4	응시수수료 납부 2.25 ~ 3. 4	시험일 3.10 ~ 4. 4	합격자 발표 4. 8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대한장애인체육회		
필기	접수 및 서류제출 4. 8 ~ 4.16	응시수수료 납부 4. 8 ~ 4.20	시험일 5.15	합격자 발표 6. 3	필기과목(4과목) 운동상해, 체육측정평가론, 트레이닝론, 장애인스포츠론		
연수	구분	등록 및 연수비 납부	연수	현장실습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연수기관(예정) ^{주3)}	
	1차	3.12 ~ 3.19	3.20 ~ 12.19	3.20 ~ 12.19	7.23, 12.24 ^{주2)}	국민체육진흥공단	
	2차	7.16 ~ 7.23	7.31 ~ 12.19	7.31 ~ 12.19	12.24		

주1) 각종 경력은 연수시작일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반기 연수는 3.20 기준, 하반기 연수는 7.31 기준임

주2) 상반기(6월)까지 연수이수(현장실습 포함)를 완료한 경우 7.23 자격증을 발급하며, 이외에는 12.24 자격증 발급

주3) 상반기·하반기 연수는 연수기관의 사정에 따라 실시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연수기관별 연수 시행 공고를 반드시 확인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요건					취득절차		비고
					실기	구술	
일반 과정	· '21.3.4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	○	○ (90)
특별 과정	· '21.3.4 현재 학교체육교사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체육 과목) 또는 특수학교 정교사 자격을 가지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에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주1)}				○	○	○ (40)
	· '21.3.4 현재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체육 과목) 또는 특수학교 준교사 자격을 가지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	○ (40)
	· '21.3.4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 국제스포츠연맹,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스포츠연맹,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 (40)
	·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실시한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연수를 수료한 후, '21.6.17 현재 장애인을 대상으로 2년간 체육을 지도한 경력이 있는 사람 ^{주2)}					○	
	· '21.3.4 현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별표 1 제2호의 비교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주3)} (1과목) (40)
	· '21.3.4 현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별표 1 제4호의 비교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주3)} (1과목) (40)
	· '21.3.4 현재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별표 1 제5호의 비교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주3)} (1과목) (40)
추가 취득	· '21.3.4 현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주4)} (3)
실기 구술	접수 및 서류제출 2.25 ~ 3. 4	응시수수료 납부 2.25 ~ 3. 4	시험일 3.10 ~ 4. 4	합격자 발표 4. 8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대한장애인체육회		
필기	접수 및 응시수수료 납부 4.15 ~ 4.23		시험일 5.15	합격자 발표 6. 3	필기과목(5과목) 필수(1) : 특수체육론 선택(4) :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연수	구분	등록 및 연수비 납부	연수	현장실습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연수기관(예정) ^{주6)}	
	1차	3.12 ~ 3.19	3.20 ~ 10.17	3.20 ~ 10.17	7.23, 11.5 ^{주5)}	백석대, 용인대, 한체대 대구대, 백석대, 용인대, 원광대, 한체대	
	2차	7.16 ~ 7.22	7.26 ~ 10.17	7.26 ~ 10.17	11.5		

주1) 적용시한 : 2021년 12월 10일까지

주2) 적용시한 : 2024년 12월 31일까지

주3) 필기1과목 : 특수체육론

주4)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주5) 상반기(6월)까지 연수이수(현장실습 포함)를 완료한 경우 7.23 자격증을 발급하며, 이외에는 11.5 자격증 발급

주6) 상반기·하반기 연수는 각 연수기관의 사정에 따라 실시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연수기관별 연수 시행 공고를 반드시 확인

유소년스포츠지도사 (하계)

■ 공통사항: 만 18세 이상인 사람

■ 자격종목(59개 종목) * 계절영향이 없는 동계종목(빙상, 아이스하키, 컬링 등) 포함

검도, 게이트볼, 골프, 궁도,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등산,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쿼시, 스킨스쿠버,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정구, 조정, 족구, 줄넘기, 철인3종경기,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펜싱, 풋살, 플라잉디스크, 피구, 하키, 합기도, 핸드볼, 행글라이딩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요건					취득절차		비고
					필기	실기	
일반과정	· '21.5.15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	○	○ (90)
특별과정	· '21.6.17 현재 학교체육교사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체육 과목)를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주1)}					○	○ (40)
	· '21.6.17 현재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준교사자격(체육 과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 (40)
	· '21.6.17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전문 또는 생활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40)
	· '21.6.17 현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40)
	· '21.6.17 현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별표1 제3호의 비교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40)
추가취득	· '21.6.17 현재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40)
	· '21.6.17 현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주2)} (3)
필기	접수 및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필기과목(5과목)		
	4.15 ~ 4.23		5.15	6.3	필수(1) : 유아체육론 선택(4) :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실기 구술	접수 및 서류제출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6.4 ~ 6.11	6.4 ~ 6.14	6.17 ~ 7.11	7.15	대한체육회(태권도 제외), 국기원(태권도)		
연수	구분	등록 및 연수비 납부	연수	현장실습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연수기관(예정) ^{주4)}	
	1차	3.12 ~ 3.19	3.20 ~ 10.17	3.20 ~ 10.17	7.23, 11.5 ^{주3)}	경남대, 중앙대, 호서대, 가톨릭관동대	
	2차	7.16 ~ 7.22	7.26 ~ 10.17	7.26 ~ 10.17	11.5	가톨릭관동대, 경남대, 광주대, 중앙대, 호서대	

주1) 적용시한 : 2021년 12월 10일까지

주2)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주3) 상반기(6월)까지 연수이수(현장실습 포함)를 완료한 경우 7.23 자격증을 발급하며, 이외에는 11.5 자격증 발급

주4) 상반기·하반기 연수는 각 연수기관의 사정에 따라 실시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연수기관별 연수 시행 공고를 반드시 확인

노인 스포츠지도사 (하계)

■ 공통사항: 만 18세 이상인 사람

■ 자격종목(57개 종목) * 계절영향이 없는 동계종목(빙상, 아이스하키, 컬링 등) 포함

검도, 게이트볼, 골프, 궁도, 그라운드골프, 농구, 당구, 댄스스포츠, 등산, 라켓볼, 럭비, 레슬링, 레크리에이션, 리듬체조, 배구, 배드민턴, 보디빌딩, 복싱, 볼링, 빙상, 사격, 세팍타크로, 수상스키, 수영, 스쿼시, 스킨스쿠버, 승마, 씨름, 아이스하키, 야구, 양궁, 에어로빅, 오리엔티어링, 요트, 우슈, 윈드서핑, 유도, 육상, 인라인스케이트, 자전거, 정구, 조정, 족구, 철인3종경기, 축구, 카누, 탁구, 태권도, 테니스, 파크골프, 패러글라이딩, 펜싱, 풋살, 하키, 합기도, 핸드볼, 행글라이딩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요건					취득절차		비고
					필기	실기	
일반과정	· '21.5.15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	○	○ (90)
특별과정	· '21.6.17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전문 또는 생활 또는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40)
	· '21.6.17 현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40)
	· '21.6.17 현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별표1 제3호의 비교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40)
	· '21.6.17 현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40)
추가취득	· '21.6.17 현재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주1)} (3)
필기	접수 및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필기과목(5과목)		
	4.15 ~ 4.23		5.15	6.3	필수(1) : 노인체육론 선택(4) :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실기 구술	접수 및 서류제출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6.4 ~ 6.11	6.4 ~ 6.14	6.17 ~ 7.11	7.15	대한체육회(태권도 제외), 국기원(태권도)		
연수	구분	등록 및 연수비 납부	연수	현장실습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연수기관(예정) ^{주4)}	
	1차	3.12 ~ 3.19	3.20 ~ 10.17	3.20 ~ 10.17	7.23, 11.5 ^{주3)}	대전대, 연세대, 이화여대, 호남대	
	2차	7.16 ~ 7.22	7.26 ~ 10.17	7.26 ~ 10.17	11.5	가톨릭관동대, 대전대, 목포대, 신라대, 연세대, 이화여자대	

주1)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주2) 상반기(6월)까지 연수이수(현장실습 포함)를 완료한 경우 7.23 자격증을 발급하며, 이외에는 11.5 자격증 발급

주3) 상반기·하반기 연수는 각 연수기관의 사정에 따라 실시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연수기관별 연수 시행 공고를 반드시 확인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동계)

■ 공통사항: 만 18세 이상인 사람

■ 자격종목 (1개 종목) : 스키

※ 동계종목 실기·구술검정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및 검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3~4월 중 실시가 불가능할 수 있음
(종목별 세부 시행 공고를 반드시 확인)

■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요건					취득절차				비고
					실기	구술	필기	연수 (시간)	
일반 과정	· '21.3.4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	○	○	○ (90)	
특별 과정	· '21.3.4 현재 학교체육교사로서「초·중등교육법」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체육 과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주1)}				○	○		○ (40)	경과 조치
	· '21.3.4 현재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로서「초·중등교육법」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준교사자격(체육 과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		○ (40)	
	· '21.3.4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전문 또는 생활 또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40)	
	· '21.3.4 현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40)	
	· '21.3.4 현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별표1 제3호의 비교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40)	
	· '21.3.4 현재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40)	
추가 취득	· '21.3.4 현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주2)} (3)	
실기 구술	접수 및 서류제출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2.25 ~ 3.4	2.25 ~ 3.4	3.10 ~ 4.4	4.8	대한체육회				
필기	접수 및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필기과목(5과목)				
	4.15 ~ 4.23		5.15	6.3	필수(1) : 유아체육론 선택(4) :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연수	구분	등록 및 연수비 납부	연수	현장실습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연수기관(예정) ^{주4)}			
	1차	3.12 ~ 3.19	3.20 ~ 10.17	3.20 ~ 10.17	7.23, 11.5 ^{주3)}	경남대, 중앙대, 호서대, 가톨릭관동대			
	2차	7.16 ~ 7.22	7.26 ~ 10.17	7.26 ~ 10.17	11.5	가톨릭관동대, 경남대, 광주대, 중앙대, 호서대			

주1) 적용시한 : 2021년 12월 10일까지

주2)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주3) 상반기(6월)까지 연수이수(현장실습 포함)를 완료한 경우 7.23 자격증을 발급하며, 이외에는 11.5 자격증 발급

주4) 상반기·하반기 연수는 각 연수기관의 사정에 따라 실시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연수기관별 연수 시행 공고를 반드시 확인

노인스포츠지도사 (동계)

■ 공통사항: 만 18세 이상인 사람

■ 자격종목 (1개 종목) : 스키

※ 동계종목 실기·구술검정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및 검정기관의 사정 등에 따라 3~4월 중 실시가 불가능할 수 있음
(종목별 세부 시행 공고를 반드시 확인)

■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요건					취득절차				비고
					실기	구술	필기	연수 (시간)	
일반 과정	· '21.3.4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				○	○	○	○ (90)	
특별 과정	· '21.3.4 현재 해당 자격 종목의 전문 또는 생활 또는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40)	
	· '21.3.4 현재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40)	
	· '21.3.4 현재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별표1 제3호의 비교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40)	
	· '21.3.4 현재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40)	
추가 취득	· '21.3.4 현재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		● ^{주1)} (3)	
실기 구술	접수 및 서류제출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2.25 ~ 3.4	2.25 ~ 3.4	3.10 ~ 4.4	4.8	대한체육회				
필기	접수 및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필기과목(5과목)				
	4.15 ~ 4.23		5.15	6.3	필수(1) : 노인체육론 선택(4) : 스포츠심리학, 운동생리학, 스포츠사회학, 운동역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윤리, 한국체육사				
연수	구분	등록 및 연수비 납부	연수	현장실습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연수기관(예정) ^{주3)}			
	1차	3.12 ~ 3.19	3.20 ~ 10.17	3.20 ~ 10.17	7.23, 11.5 ^{주2)}	대전대, 연세대, 이화여대, 호남대			
	2차	7.16 ~ 7.22	7.26 ~ 10.17	7.26 ~ 10.17	11.5	가톨릭관동대, 대전대, 목포대, 신라대, 연세대, 이화여자대			

주1) 스포츠윤리센터의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3시간)

주2) 상반기(6월)까지 연수이수(현장실습 포함)를 완료한 경우 7.23 자격증을 발급하며, 이외에는 11.5 자격증 발급

주3) 상반기·하반기 연수는 각 연수기관의 사정에 따라 실시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연수기관별 연수 시행 공고를 반드시 확인

건강관리운동사

자격요건						취득절차				비고	
						필기	실기	구술	연수 (시간)		
일반 과정	· '21.6.26 현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 포함) ^{*1)} 이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체육 분야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 '21.6.26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제1호 ^{*2)} 에 해당하는 학교(학제 또는 교육과정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학교와 같은 수준이거나 그 이상인 학교를 말한다)에서 체육 분야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 문제부 장관 인정 외국의 체육분야 전문학사, 학사, 석·박사					○	○	○	○ (200)		
						○	○	○	○ (200)		
필기	접수 및 서류제출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필기과목(8과목)				
	5.20 ~ 5.28		5.20 ~ 6.7		6.26	7.12	기능해부학(운동역학 포함), 운동생리학, 스포츠심리학, 건강·체력평가, 운동처방론, 병태생리학, 운동상해, 운동부하검사				
실기 구술	접수 및 서류제출		응시수수료 납부		시험일	합격자 발표	검정내용		실기 및 구술검정기관		
	7.13 ~ 7.16		7.13 ~ 7.19		7.24 ~ 7.26 ^{*3)}	7.29	심폐소생술(CPR)/응급처치, 건강/체력측정평가, 운동트레이닝방법, 운동손상 평가 및 재활		국민체육진흥공단		
연수	구분	등록 및 연수비 납부		연수		현장실습		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연수기관(예정) ^{*5)}	
	1차	3.12 ~ 3.19		3.20 ~ 11.21		3.20 ~ 11.21		7.23, 11.26 ^{*4)}		순천향대	
	2차	7.30 ~ 8.5		8.7 ~ 11.21		8.7 ~ 11.21		11.26		부경대, 순천향대, 연세대, 조선대	

주1) 졸업예정자의 경우 2022년 2월 28일까지 졸업(학위)증명서 반드시 제출, 미제출시 최종 불합격(자격검정 및 연수 합격취소, 응시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주2) 제1호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주3) 응시인원에 따라 7월 24일~26일 중 시행 예정으로, 일정 확정 시 추후 홈페이지 공지

주4) 상반기(6월)까지 연수이수(현장실습 포함)를 완료한 경우 7.23 자격증을 발급하며, 이외에는 11.26 자격증 발급

주5) 상반기·하반기 연수는 각 연수기관의 사정에 따라 실시여부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연수기관별 연수 시행 공고를 반드시 확인

유의사항

□ 일반사항

- 동일 자격등급에 한하여 연간 1인 1종목만 취득 가능
- 필기 및 실기·구술시험 장소는 추후 체육지도자 홈페이지에 공지 예정
- 하계 필기시험 또는 동계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 다음 해에 실시되는 해당 자격검정 1회 면제
- 필기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하며, 필기시험을 면제받거나 실기·구술시험을 먼저 실시하는 동계종목의 경우, 실기·구술시험에 합격한 해의 12월 31일부터 3년 이내에 연수과정을 이수하여야 함.
※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한 경우 의무복무 기간은 불포함
※ 코로나19로 인해 연수과정이 시행되지 않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은 불포함
- 나이 요건 충족 기준일은 각 자격요건별 취득절차상 첫 절차의 시험일 기준
※ 첫 취득절차가 필기인 경우 필기시험일 기준, 첫 취득절차가 실기인 경우 실기시험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요건(만 18세)을 충족해야 함.
- 졸업예정자의 경우 졸업증명서 최종제출일(22.2.28) 이후 3월에 자격증 발급 ※사전 발급 불가

□ 체육지도자 결격사유

- 체육지도자 자격증 발급 전 관련법령에 의거 체육지도자 결격사유 조화를 실시하며, 조화 결과 결격사유 해당자는 자격검정 및 연수 합격 취소 (응시수수료 및 연수비 환불 불가)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5(체육지도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5.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체육지도자(제12조제1항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사람을 포함한다)로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자격이 취소(이 조 제1호에 해당하여 자격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자격검정이 중지 또는 무효로 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자격검정 합격 및 연수 이수기준

- 필기시험 : 과목마다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60% 이상 득점
- 실기·구술시험 : 실기시험과 구술시험 각각 만점의 70% 이상 득점
- 실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종목 및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격검정기관이 정한 바에 따라 실기 및 구술시험을 통합 시행한 후 합격 및 불합격 결정 가능(수수료는 환불하지 않음)
- 연수 : 연수과정의 100분의 90 이상을 참여하고, 연수태도·체육 지도·현장실습에 대한 평가점수 각각 만점의 100분의 60 이상

□ 기타사항

- 체육지도자 자격응시와 관련하여 모든 지원 및 등록 절차는 체육지도자 홈페이지(www.insports.or.kr)를 통하여 확인 가능하므로 수시로 홈페이지 확인 요망
- 체육지도자 자격 원서접수는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접수 가능

자격검정 및 연수 수수료

- 필기시험 : 18,000원
실기 및 구술시험 : 30,000원
자격증 발급(재발급) : 1,000원
- ※ 자격증 발급(재발급)에 따른 택배비는 본인 부담
- 연수

자격구분	연수 수수료	자격구분	연수 수수료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일반과정 500,000원 특별과정 500,000원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일반과정 200,000원 특별과정 150,000원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일반과정 200,000원 특별과정 150,000원	노인스포츠지도사	일반과정 200,000원 특별과정 150,000원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일반과정 250,000원 특별과정 150,000원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일반과정 500,000원 특별과정 500,000원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일반과정 200,000원 특별과정 150,000원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일반과정 250,000원 특별과정 150,000원
건강운동관리사	일반과정 400,000원		

실기 · 구술기관 연락처

자격구분	기관명	전화번호	비고
전문, 생활, 유소년, 노인 스포츠지도사	대한체육회(태권도 제외)	02)2144-8172	* 태권도 종목에 한해 국기원을 해당 자격 단일 자격검정기관으로 지정
	국기원(태권도)	063)320-0209~0212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대한장애인체육회(태권도 제외)	031)526-9446	
	국기원(태권도)	063)320-0210~0212	
건강운동관리사	국민체육진흥공단	02-410-1177	

연수기관 연락처

자격구분	기관명 및 전화번호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1)	국민체육진흥공단 02)410-1177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6)	국기원 063)320-0210~2	동아대 051)200-6350	조선대 062)230-7404	중앙대 02)820-8478	충남대 042)821-6441	한체대 02)410-6662~4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	국민체육진흥공단 02)410-1177	원광대 063)850-6206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20)	강릉원주대 033)640-2647	건국대 043)840-3900	경기대 031)249-1480	경남대 055)249-6380	경상대 055)772-2290	경희대 02)961-9560	계명대 053)580-5513
	군산대 063)469-4641	부경대 051)629-5633	안동대 054)820-7380	용인대 031)8020-2728	인천대 032)835-8570	전남대 062)530-2550	전북대 063)270-3590
	제주대 064)754-8318	중앙대 02)820-6478	충남대 042)821-6403	충북대 043)249-1808	한양대 031)400-4164	호서대 041)540-5860	
유소년스포츠지도사 (5)	가톨릭관동대 033)649-7722	경남대 055-249-6381	광주대 062)670-2209	중앙대 02)820-6478	호서대 041)540-5865		
노인스포츠지도사 (7)	가톨릭관동대 033)649-7720	대전대 042)280-2910/2924	목포대 061)450-6095	신라대 051)999-5574	연세대 02)2123-6582	이화여자대 02)3277-2556	호남대 062)940-3709/3617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1)	국민체육진흥공단 02)410-1177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5)	대구대 053)850-6080	백석대 041)550-2989	용인대 031)8020-3497	원광대 063)850-6617	한체대 02-410-6760		
건강운동관리사 (4)	부경대 051)629-5633	순천향대 041)530-1544	연세대 02)2123-8139	조선대 062)230-7404			

- ☐ 체육지도자 홈페이지(www.insports.or.kr) : 원서접수, 연수등록, 결과발표 등
☐ 대표 안내전화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지도자 콜센터 02)410-1177

본 시행 계획은 2021년도 연간 추진일정 안내를 위한 공고이며, 응시 자격요건 등 세부사항은 시험 1개월 전 체육지도자 홈페이지에 공고되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코로나OUT!
대한민국 으라차차!

스포츠를 마음껏 즐길 생동안

스마일로 건강한 대한민국
국민체육진흥공단이 함께합니다



KSPO 국민체육진흥공단

☺ **체육진흥기금 조성**
경륜·경정, 체육진흥투표권 사업 등을 통한 기금 조성

☺ **체육복지사업 지원**
체육인 연금, 국민체력100, 스포츠강좌 이용권 등 지원

☺ **체육진흥기금 지원**
생활체육, 전문체육, 장애인체육, 국제대회 등 지원

☺ **스포츠 산업 육성 및 스포츠 과학 연구**
스포츠 산업 활성화, 스포츠 정책 개발, 스포츠 과학 연구

☺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근린생활형 소규모 체육관 등 건립 지원

☺ **서울올림픽 기념사업 및 문화사업**
올림픽공원, 기념관, 소마미술관 등 문화·여가시설 운영